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217
------------	-----

제출년월일 : 2001.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정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

- 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함(안 제4조)
- 나.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 등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 바.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읍면동장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주민자치위원회]

- 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나.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함(안 제17조)
- 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21조)
- 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부록)중 조례준칙 사본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

하여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일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전의 등 주민자치기능
- ⑤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충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의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 6. 29(金)
자체 13101-476

2段階 邑面(洞) 機能轉換 推進指針

이 지침은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 사무소 기능
전환을 위한 세부추진 지침임

行政自治部

附 錄

1. 읍면 유형구분 세부기준
2. 동 유형구분 세부기준
3. 읍면 유형별 존치 이관사무 세부내역
4. 동 유형별 존치 이관사무 세부내역
5.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6.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사례
7. 자치법규 정비요령
8. 이관사무 주민불편대책 사례
9. 이관사무수행 제도개선 사례

00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적농·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시장)가 정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시장)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시장)가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시장)는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시장)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시장)와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시장)와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

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

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읍면개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00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00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00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 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영주시보 제306호(2001
년 8월 22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1년 8월 27일 ~ 2001년 9월 17일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안 검토 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217호
- 의안명 :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2.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

- 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함(안 제4조)
- 나.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 등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안 제10조)
- 마.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 바.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읍면동장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14조)

【주민자치위원회】

- 가.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나.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함(안 제17조)
- 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21조)
- 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4. 검토의견

-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제1장 총칙**

- 안 제 1조 : 조례의 제정목적
 - 안 제 2조 : 용어의 정의
 - 안 제 3조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원칙

- **제2장 주민자치센터**

- 안 제 4조 : 센터의 설치 · 명칭 제정
 - 안 제 5조 : 센터의 수행기능
 - 안 제 6조 : 시설 및 프로그램 구비
 - 안 제 7조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안 제 8조 : 자원봉사자 모집
 - 안 제 9조 : 기능수행을 위한 강사 활용
 - 안 제10조 : 사용료징수
 - 안 제11조 : 자치센터이용 및 제한
 - 안 제12조 : 주민참여방안 강구
 - 안 제13조 : 수당지급
 - 안 제14조 :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안 제15조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 안 제16조 : 위원회 기능
 - 안 제17조 : 위원회 구성
 - 안 제18조 : 위원장의 직무
 - 안 제19조 : 간사 지명
 - 안 제20조 : 위원의 해촉
 - 안 제21조 : 위원회 회의
 - 안 제22조 : 회의록 작성 비치
 - 안 제23조 : 위원의 실비보상 등
 - 안 제24조 :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칙으로 제정토록 함.
-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부터 2단계에 걸쳐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 2001. 6.29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가 지침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복지·여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나,
 - 우리시 읍면동의 경우 자치센터를 설치할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건물신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 저하, 농촌의 현 실정상 주민이용률 저조, 창의적인 프로그램 및 강사 확보 곤란, 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적극적인 활동 보장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바,

-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여가, 복지시설적 측면 뿐만아니라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1. 11.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